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21다276225(본소)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

2021다276232(반소) 소유권말소등기

원고(반소피고), 상고인

주식회사 아림개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외 1인

피고(반소원고), 피상고인

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융겸

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. 9. 3. 선고 2020나26714(본소), 2021나24043

(반소) 판결

판 결 선 고 2023. 4. 27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본소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

가.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다.

- 1)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.
- 2) 이 사건 가능기 설정을 위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질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매매예약 및 가능기에 대하여 「가능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가능기담보법'이라 한다)이 적용된다.
- 3)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 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원고가 2020. 6. 26. 피고에 게 발송한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서면만으로는 가등기담 보법에 따른 청산금 평가액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).
- 4)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.
- 5) 따라서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,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- 나.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,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

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또는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및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한 잘못이 없다.

2. 반소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

가.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,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 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. 여기서 말하는 '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'은 주문에 반드 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 어 있어야 한다(「대법원 등기예규 제1692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 제2항 참조).

한편 소송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 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 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, 등기의무자로서는 이미 등기명의를 이전받 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.

나.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피고가 반소로써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,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반드시 이 사건 본소의 확정 이후 별도의 소로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.

3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

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박정화
주 심	대법관	김선수
	대법관	노태악
	대법관	오경미